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농어업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개정

-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「농작물재해보험법」과 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」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을 발표함.
- 이번 법 개정은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·지원하는 통합 보험 체계를 구축한 것임.
  -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,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전면 확대하고,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, 야생동물피해, 화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대상재해가 농어업 경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로 확대됨으로써 농어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·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.
  - 또한,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.
- 개정 법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,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.

(보험으로 각종 농어업 재해위험 통합관리,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, 3/4)